2022년 어양동 자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2022. 11. 2. ~ 11. 4.(3일간)
○ 감 사 범 위 : 2020. 10. ~ 2022. 9.(2년)
○ 감 사 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 사 중 점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주민자치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Ⅱ 감사결과

○ **총 괄**

(단위 : 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회수	추급	반환	세입조치	계	경징계	훈계	주의
15건	6건	9건	-	4건 (◎◎)	2건 (◎◎)	1건 (◎◎)	1건 (◎◎)	-	4건 (◎명)	-	2건 (◎명)	2건 (◎명)

○ **수범사례(우수사례)**
▸ 홀로세대 밑반찬 지원
▸ 한소반 나눔 냉장고 운영

Ⅲ 지적사항 목록

일련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원)	신분상
계	15건	시정 6 주의 9	추급 1 회수 2 환급 1 (◎◎◎)	주의 2 훈계 2 (●명)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추급 (◎◎◎) 회수 (◎◎◎)	
2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미계약	시정		
3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주의		
4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료 지급 부적정	주의		주의 (●명)
5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주의		
6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주의		
7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리 소홀	주의		주의 (●명)
8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	
9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훈계 (●명)
10	장애등급 재판정촉구 안내 지연	주의		
11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시정		
12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환급 (◎◎◎)	
13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업무 부적정	주의		
14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주의		
15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훈계 (●명)

Ⅳ 지적사항 요약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익산시 여비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우리 시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자체 기준경비 결정내역에 따르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매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자에게 월액여비 전액(170,000원)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관외 출장일수는 산정하지 않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회계처리 미숙으로 출장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월액여비를 과다·과소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미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갖춰 두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서류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도급, 용역계약의 체결 시에는 대금 청구액의 2.5%를,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체결 시에는 1.5%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 물품 구입' 외 ◔건을 지출하면서 채권매입 대상임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료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 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 조치 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결제 예정금액을 수시로 대조하여 **신용카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대금 부족 등으로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카드 이용대금이 잔액 부족으로 최장 ◆일 지연 지출되어 신용카드 이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으며, 연체료 ◍◍◍원이 카드 결제계좌에서 지출되는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등 소홀히 하였음.

6.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채용)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사업 또는 사용목적에 맞는 채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채용 공고 실시, 근로계약 체결 및 사역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 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공고 등 일부 절차에 미흡한 사실이 있음.

7.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리 소홀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수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 제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조례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에도 일부 위원 위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8.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7조(실비보상) 규정에 따르면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지급하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한 통장에게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정산하여 지급했어야함에도, 한달분 통장수당을 지급하여 총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9.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5편 수급자 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따르면 급여관리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급여관리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5편 수급자 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따르면 급여관리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급여관리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하고,

○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고,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거주 현황, 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 여부 및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등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급여**

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정 사용 의심 사례가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 급여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10.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 안내 지연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함.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명에 대하여 재판정 촉구서를 최단 ◒일에서 최장 ◑일까지 지연하여 촉구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1.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급대상으로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로 명시**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 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사망, 차적변경 등으로 회수 사유가 발생한 ▨명에 대하여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2.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신고 또는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과태료의 감경)에 따르면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기간 산정 및 경감률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원을 과오 부과하는 등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음.

13.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업무 부적정

○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한 후 위임장의 위임한 사람란의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표] ‘제출서류 등’에 따르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불필요하게 징구하여 첨부하였으며, 일부항목 미기재에도 보완요청 없이 발급 처리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4.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출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위임장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 없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일부 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위임장 ◈건에 대해 보완 요구등 별도의 조치없이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불필요하게 징구한 사실이 있음.

15.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신고 등) 및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인감증명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신청시 사망시각을 기준으로 **사망시각 이후에 발급신청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발급신청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망자 인감발급 예방 안내 문구를 아크릴판으로 제작하여 인감발급 시 잘 보이도록 민원창구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어양동에서는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 신청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